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0083(본소), 2024가합10766(반소) 판결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신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흥기

피고(반소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울

담당변호사 강신중

변론 종결2024. 11. 19.

판결 선고2024. 12. 10.

주 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430,219원 및 이에 대한 2024. 9. 24.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43,1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5,449,46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17.경 전남 신안군 B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와 2018. 5. 15. 계약금액 2,234,436,500원, 계약기간 2018. 5. 23.부터 2019. 5. 17.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23.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선금금으로 9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등에게 하도급주었다.

C	영구앵커공사	2018. 6. 28.	각 계약일부터 2019. 5. 17.까지	204,600,000
철근콘크리트공사	2018. 6. 28.	199,300,000		
D	석공사	2018. 7. 5.	600,000,000	
E	연속섬유보강토공사	2018. 7. 5.	330,330,000	

다.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1차 기성금으로 선금금 정산액 349,030,000원을 공제한 436,353,000원(D 석공사 대금 247,441,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9. 4. 23.경 피고에게 '관광철 주민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공사 정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정지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 12. 18. 피고에게 2차 기성금으로 선급금 정산액 39,362,000원을 공제한 49,208,000원(C 토공 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정지된 이후 위 공사와 관련하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었고, 당초 예정한 타격식 천공 작업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천공 방법을 타격식에서 회전수세식(저진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노후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주민들의 승낙 협조가 저조하여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원고는 2020.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8절 제4조 가.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들어 2020. 9. 14.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철거되었다.

사. 원고는 2021. 11. 16.경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중도 포기된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금을 1,035,371,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 및 기성금 합계 1,478,561,000원(= 선급금 993,000,000원 + 1차 기성금 436,353,000원 + 2차 기성금 49,208,000원, 이하 기지급된 위 돈을 통틀어 '선급금 등'이라 한다)에서 위 타절정산금 1,035,371,000원을 공제한 잔액 443,190,000원(= 1,478,561,000원 - 1,035,371,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4조 라.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등 합계 1,478,561,000원에서 위 계약 해지 당시까지 이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당초 물량 기준 타절정산금 1,035,371,000원을 공제한 잔액 443,190,000원(=

1,478,561,000원 - 1,035,371,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당초 약정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추가로 필요한 ① 야적장 위치 변경, ② 가도공 제체고 송상, ③ 가도 설치에 따른 해수라인 이설, ④ 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상부 보조기층 포설 등 공사(이하 '추가 공사'라 한다)를 보완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천공 방식이 변경되어 시험천공비가 증가하였으며 가도공 및 부대공의 시공 수량, 사급자재 시공 수량 등이 증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한 공사 부분의 타절정산금은 추가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1,434,847,351원이고, 증가된 시험천공비가 8,935,868원이므로 위 각 금액이 기지급된 선급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는 원고 측 사정으로 인하여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그 공사기간은 당초 예정한 준공일(2019. 5. 17.)을 기준으로 총 405일(2019. 5. 18.부터 피고가 현장 철수를 통보받기 전날인 2020. 6. 25.까지)이 추가 연장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연장기간 동안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간접비용을 98,208,000원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고, 하수급인인 D와 C 또한 같은 기간 아래와 같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간접비용 합계 112,019,247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와 하수급인이 부담하게 된 위 각 간접비용(이하 '추가 간접비'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추가 간접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등 반환 채권을 상계한다.

C	영구앵커공사	48,023,375
철근콘크리트공사	38,881,720	
D	석공사	25,114,152
합계	112,019,247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등 합계 1,478,561,000원에서 타절정산금, 시험천공비를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피고 및 하수급인의 추가 간접비 채권으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 등 잔액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등에서 공제 및 상계하고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 175,449,466원(= 1,434,847,351원 + 8,935,868원 + 98,208,000원 + 112,019,247원 - 1,478,5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175,449,466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 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2020. 9. 14.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실, 피고가 위 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선급금 등 총 금액은 1,478,561,000원(= 선급금 993,000,000원 + 1차 기성금 436,353,000원 + 2차 기성금

49,20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 공사대금은 위 선금금 등에서 당연히 충당되어야 한다.

다.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타절정산금 감정인 F의 2023. 12. 31.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시공한 공사비는 추가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1,434,847,351원이고, 공사 현장이 철거되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감정 결과에 따른 위 공사비를 타절정산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원고와 피고는 시공 물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출 공사비를 타절정산금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 공사 부분은 원고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1,035,371,000원만을 타절정산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추가 공사를 한 부분 역시 원고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절정산금은 추가 공사 및 이에 따른 추가 물량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3. 12. 31.자 감정서 제88면(감정서 자체 면수 기준, 이하 같다) 이하에 첨부된 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하수급인 D이 2018. 11.경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추가 공사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해수공급라인 설치 및 철거, 보조기 총공사, 난간 철거 및 설치' 작업 비용을 산정한 사실, 유한회사 G가 2018. 9.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해수공급라인 설치 및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자재대, 경비, 노무비 등을 견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감정서 제55면 이하에 첨부된 피고의 현장대리인이 2019. 4. 5. 원고의 건설사업 관리단에 제출한 실정보고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가도공 체제고 송상, 오탁방지막 설치, 야적장 위치 변경, 해수공급라인 설치 및 철거, 야적장 진입로 난간 철거, 건축물 안정성 검토, 천공 방식 변경으로 인한 시험천공, 가도공 상단 보조기총 포설, 사토 운반거리 조정'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시공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가 공사 전후로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위와 같은 견적서 및 실정보고서의 각 기재 내용에 더하여, 추가 공사의 각 항목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관한 이 사건 공사에 수반하여 필요한 작업으로 보이고, 위 감정서 제53면에 첨부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추가 공사의 지시를 받은 시기를 이 사건 공사 초반인 2018. 9.부터 2018. 11.까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 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현장 또는 공사 방법 등의 문제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지시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위 감정서 제193면에 첨부된 원고의 2020. 9. 11.자 회신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이 제출한 위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가도 추가 설치는 원고의 승인 없이 이미 시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지 표시와 함께 이루어진 위 회신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타절정산금의 범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위 회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행한 추가 공사가 원고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1조 다.항이 '설계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 사전에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공사 부분의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같은 규정 단서는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협의하에 설계변경의 시기를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사전에 추가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원고의 지시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에 따른 공사비를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시험천공비 감정인 F의 2023. 12. 31.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추가로 지출한 시험천공비가 8,935,8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시험천공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합의한 후에 실시한 것도 아니어서 타절 정산 대상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갑 제3호증과 2023. 12. 31.자 감정서 및 2024. 8. 25.자(보완) 감정(이하 '보완 감정'이라 한다)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아래 하수급인인 C를 통하여 회전수세식 변경 검토를 위한 시험천공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험천공비는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정산 대상이 된다.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당초 예정한 타격식 천공 방법에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자 천공 방법을 회전수세식으로 변경 시도한 사실이 있다.

나) 2023. 12. 31.자 감정서 제58면에 첨부된 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하수급인 C는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위 천공 방법 변경과 관련한 시험천공으로 감정인이 인정한 위 감정 금액(8,935,868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4. 8. 25.자 보완 감정서 756면 이하에 첨부된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C는 2018. 12. 13.경 강원도 양양군 H 소재지에서 타격식 천공 방법과 회전수세식 천공 방법에 따른 각 소음과 진동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비교 분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이 2019. 4. 5. 원고에게 시험천공을 포함한 실정보고를 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필요에 따라 C를 통하여 천공 방법 변경을 위한 회전수세식 시험천공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험천공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의 지시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이 2019. 4. 5. 제출한 실정보고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험천공비를 공사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다투나, 2023. 12. 31.자 감정서 제193면에 첨부된 원고의 2020. 9. 11.자 회신에 의하더라도 그 회신의 취지는 공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관하여는 별다른 예산 대책이 없다는 것일 뿐이고, 시험천공비 자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의 인식하에 시험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을 뒤집고 피고가 임의로 이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등 합계 1,478,561,000원에서 타절정산금 1,434,847,351원, 시험천공비 8,935,868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선급금 등 잔액은 34,777,781원이다(= 1,48,561,000원 - 1,434,847,351 - 8,935,868원).2) 피고의 공제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6조 가.항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 등)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다.항 단서에 의하면 공사의 정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항에 의하면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고, 같은 조 라.항은 계약금액의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9. 4. 23. 원고의 요청으로 정지되었다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 지연, 타격식 천공 방법과 관련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한 준공일(2019. 5. 17.)을 경과하였고, 그 상태로 원고가 현장 철수 통보를 한 전날인 2020. 6. 25.까지 정지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정지 경위, 정지 이후 현장 철수 통보가 있기 전까지의 현장 상태 및 현장 철수를 통보한 원고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지된 이후 원고가 현장 철수를 통보할 때까지 상호 양해하여 그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준공일을 경과한 이후 피고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고 연장을 전제로 한 피고의 추가 간접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2조 가.항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그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공사 정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수급인 등으로 하여금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체책임을 면하고 추가로 발생한 비용의 지출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일방의 통보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의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를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다음 날인 2019. 5. 18.부터 피고가 현장 철수를 통보받기 전날인 2020. 6. 25.까지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조정금액(추가 간접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

감정인 F의 2023. 12. 31.자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서에 첨부된 급여 대장 등 기재에 의하면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현장대리인 I과 기술자 J에 대하여 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0. 6. 26. 피고에게 공사 현장 철수를 통보한 문서(을 제5호증)에는 '건설기술인 및 현장대리인 철수를 통보하니 현장을 정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한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인 등이 상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통보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인의 철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연장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의 현장대리인과 기술자가 근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계약 연장기간 동안 피고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지출한 추가 간접비는 98,20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사업자인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때 하수급인의 간접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C, D 역시 각

하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연장된 기간 동안 그 연장에 따른 조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공사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는 원사업자인 수급인의 현장소장과 기술자가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수급인은 통상적으로 작업 중에만 현장에 상주할 뿐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D이 이 사건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추가 간접비 상당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98,208,000원 상당의 추가 간접비 채권이 있다. 피고의 추가 간접비 채권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선급금 등 잔액 채권 34,777,781원은 모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피고가 추가 간접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선급금 등 잔액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9. 13.자 반소장이 2024. 9. 2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추가 간접비 채권과 원고의 선급금 등 잔액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선급금 등 잔액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의 추가 간접비 채권은 63,430,219원(= 98,208,000원 - 34,777,781원)이 남는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제 및 상계로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등 합계 1,478,561,000원에서 타절정산금, 시험천공비, 추가 간접비를 공제 또는 상계하고 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30,219원(= 1,478,561,000원 - 1,434,847,351원 - 8,935,868원 - 98,208,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3,430,21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9.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판사

판사이판사

판사박판사

1) 감정인이 2024. 8. 25.자 보완 감정에서 피고가 추가로 확인을 구하는

시험천공비(18,964,132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23. 12. 31.자 감정에서 인정한 시험천공비 8,935,868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보완 감정 결과는 피고가 C를 통하여 시행한 시험천공비 8,935,868원 상당액을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위 선급금 등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4조 라.항에 따라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잔액 원금에 대하여만 반환 의무가 있다.